

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 회의자료

안전관리팀

2023/ 1/ 5

1. 일 자 : 2023. 1. 5(목)
2. 위 원 : 사무처장(위원장), 공과대학장, 환경대학장, AI융합대학장, 산학협력단장, 항우기학부장, 항전정학부장, 소프트웨어학과장, 스마트드론공학과장, 신소재공학과장, A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장, 항공교통물류학부장, 항공운항학과장,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(3인)
3. 안 건 : ‘연구실 및 실험·실습실 안전관리 규정’ 개정(안) 심의
 - 개정(안) 주요 내용
 - 변경 사유 :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 부서명 및 위원 변경
 - 안전관리부서 명칭 변경 : 시설·안전관리팀 → 안전관리팀
 - 위원 변경 : AI융합학부장 → AI자율시스템공학과장
 - 간사 변경 : 시설·안전관리 팀장 →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담당
 -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
 - 연구실 안전점검 기준 세분화
 - ☞ 연구실 및 실험·실습실 안전관리 규정 개정(안) 신규대조표 참조

연구실 및 실험·실습실 안전관리 규정 개정(안) 신·구대조표

현 행	개 정 (안)	
<p>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” (이하 ‘연구실안전법’이라 한다) 및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교’라고 한다) “대학 안전관리 규정”에 의거하여 연구실 및 실험·실습실에서 발생 가능한 유해요인으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9.1.20., 2014.10.23., 2018.6.15., 2021.12.13.></p>	<p>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” (이하 ‘연구실안전법’이라 한다) 및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교’라고 한다) “연구실 및 실험·실습실 안전관리 규정”에 의거하여 연구실 및 실험·실습실에서 발생 가능한 유해요인으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09.1.20., 2014.10.23., 2018.6.15., 2021.12.13., <u>0000.00.00.</u>></p>	<p>적용 규정 변경</p>
<p>제4조 (조직)</p> <p>① 대학에 속해있는 연구실 및 실험·실습실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<u>시설·안전관리팀</u>을 주관부서로 하고 각 학부(과)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둔다.<개정 2014.10.23., 2018.6.15., 2021.12.13.></p> <p>②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구실 및 실험·실습실 안전관리 조직도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개정 2014.10.23., 2016.3.1., 2018.6.15., 2021.12.13.></p>	<p>제4조 (조직)</p> <p>① 대학에 속해있는 연구실 및 실험·실습실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<u>안전관리팀</u>을 주관부서로 하고 각 학부(과)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둔다.<개정 2014.10.23., 2018.6.15., 2021.12.13., <u>0000.00.00.</u>></p> <p>② <현행과 동일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구실 및 실험·실습실 안전관리 조직도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개정 2014.10.23., 2016.3.1., 2018.6.15., 2021.12.13., <u>0000.00.00.</u>></p>	<p>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도 변경</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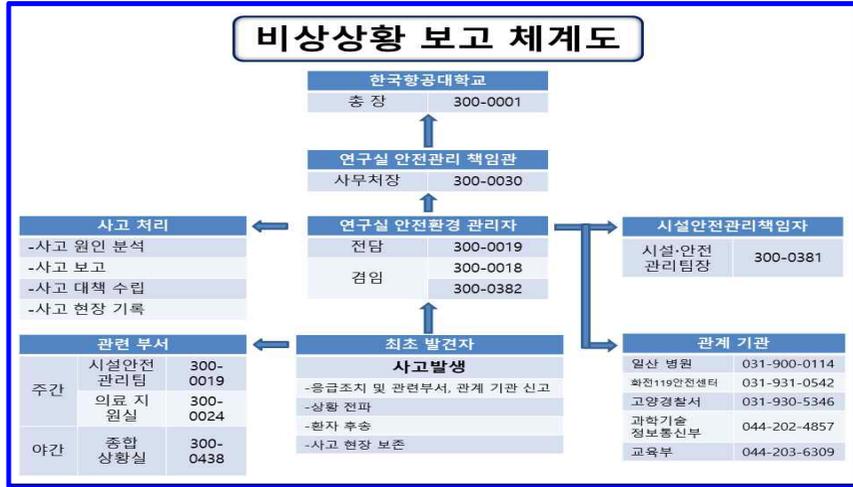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<p>제5조 (안전관리 총괄 책임관) 본 대학교의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책임은 총장에 귀속되며,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. <개정 2009.1.20., 개정 2014.10.23.> 1~3. <생략></p>	<p>제5조 (안전관리 총괄 책임관) 본 대학교의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책임은 총장에 귀속되며,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. <개정 2009.1.20., 개정 2014.10.23.> 1~3. <현행과 동일> 4. <u>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학부(과) 연구실 책임자를 지정한다.<신설 0000.00.00.></u></p>	<p>안전관리 총괄 책임관 직무 신설</p>
<p>제7조 (연구실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) 각 학부(과)장은 연구실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소속 단과대학 및 학부(과)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<개정 2014.10.23., 2018.6.15.> 1. <생략> 2. 해당 학부(과)별로 연구실 책임자를 지정하고 역할에 맞는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한다. <개정 2014.10.23., 2016.3.1., 2018.6.15.></p>	<p>제7조 (연구실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) 각 학부(과)장은 연구실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소속 단과대학 및 학부(과)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<개정 2014.10.23., 2018.6.15.> 1. <현행과 동일> 2. 삭제 <0000.00.00.></p>	<p>안전관리 책임자 직무 조항 이관</p>
<p>제9조 (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의 직무) ①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는 연구실안전법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8조 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<개정 2014.10.23., 2021.12.13.> 1~9. <생략></p>	<p>제9조 (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의 직무) ①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는 연구실안전법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8조 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<개정 2014.10.23., 2021.12.13.> 1~9. <현행과 동일> 10. <u>위험물 반입 및 폐시약 폐기에 관한 사항(별첨 3)</u> <신설 0000.00.00.></p>	<p>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직무 신설</p>
<p>제11조 (전담부서의 직무) 시설·안전관리팀은 대학 전체의 연구실 및 실험·실습실 안전업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<개정 2014.10.23., 2021.12.31.> 1. 본 대학교의 <u>안전관리규정</u>을 작성하고 이를 각 학부(과) 연구실에 배포하고 필요시 개정한다.<개정 2014.10.23., 2018.6.15.></p>	<p>제11조 (전담부서의 직무) <u>안전관리팀</u>은 대학 전체의 연구실 및 실험·실습실 안전업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<개정 2014.10.23., 2021.12.31., 0000.00.00.> 1. 본 대학교의 <u>연구실 및 실험·실습실 안전관리규정</u>을 작성하고 이를 각 학부(과) 연구실에 배포하고 필요시 개정한다.<개정 2014.10.23., 2018.6.15., 0000.00.00.></p>	<p>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안전관리규정 명칭 표기</p>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<p>제12조 (목적 및 구성)</p> <p>①~② <생략>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학부(과)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2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.<개정 2009.1.20., 2014.10.23., 2018.6.15., 2021.12.13.></p>	<p>제12조 (목적 및 구성)</p> <p>①~② <현행과 동일></p> <p>③ <u>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, 학부(과)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2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며,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.<개정 2009.1.20., 2014.10.23., 2018.6.15., 2021.12.13., 0000.00.00.></u></p>	<p>위원회 위원장 간사 지정 권한 추가</p>
<p>제13조 (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본 대학교 “대학 안전관리 규정”을 따르되, 연구실안전법 제11조 ②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 할 수 있다.<개정 2009.1.20., 2014.10.23., 2021.12.13.></p>	<p>제13조 (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연구실안전법 제11조 ②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 할 수 있다.<개정 2009.1.20., 2014.10.23., 2021.12.13., <u>0000.00.00.</u>></p>	<p>대학안전관리 규정 명칭 삭제</p>
<p>제15조 (안전점검)</p> <p>① 각 연구실 및 실험실습실의 연구실 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들은 매일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전반적인 안전 사항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. 다만, 동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이상 실시한다.<개정 2014.10.23., 2018.6.15., 2021.12.13.></p> <p>②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는 학기별 1회 이상 각 개별 연구실 및 실험·실습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체크리스트 양식을 활용하여 실시한다.<개정 2014.10.23.></p>	<p>제15조 (안전점검)</p> <p>① <u>일상점검 :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·기구·전기·약품·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상태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점검으로서 연구활동 시작 전에 매일 1회 실시한다. 점검일지 양식은 <별첨4>를 참조하여 작성 후 안전관리부서로 제출한다.<개정 2014.10.23., 2018.6.15., 2021.12.13., 0000.00.00.></u></p> <p>② <u>정기점검: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·기구·전기·약품·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상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(자체 점검 또는 외부기관 점검 포함)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면제한다. <개정 2014.10.23., 2021.12.13., 0000.00.00.></u></p>	<p>연구실 안전법 시행령 제 10조(안전점검의 실시 등) 및 제 11조(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)반영 (안전점검 세분화)</p>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<p>③ 연구실 안전관리 책임관은 1년에 1회 이상 대학 전체의 안전점검을 세부적으로 실시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면제한다.<개정 2014.10.23., 2021.12.13.></p> <p>1. 저위험연구실<신설 2021.12.13.></p> <p>2.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. 이 경우 정기점검 면제기한은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신설 2021.12.13.></p> <p>④ 총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시급한 사안이 있는 경우, 외부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후 후속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.</p>	<p>1. 저위험연구실</p> <p>2.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. 이 경우 정기점검 면제기한은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p> <p>③ 정밀안전진단 :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(외부기관 점검 포함)을 실시해야 하는 연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로 하며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.<개정 2014.10.23., 2021.12.13., 0000.00.00.></p> <p>1. 연구활동에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</p> <p>2. 연구활동에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</p> <p>3. 연구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</p> <p>④ 특별안전점검 : 폭발사고·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.<개정 0000.00.00.></p>	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-----	---------	-----

제24조 (사고발생 시 긴급 대처 및 행동 요령 등)
 ① <생략>
 ② 사고발생 등에 따른 비상상황 보고 체계도는 다음과 같다.
 <신설 2016.3.1., 개정2018.6.15., 2021.12.13.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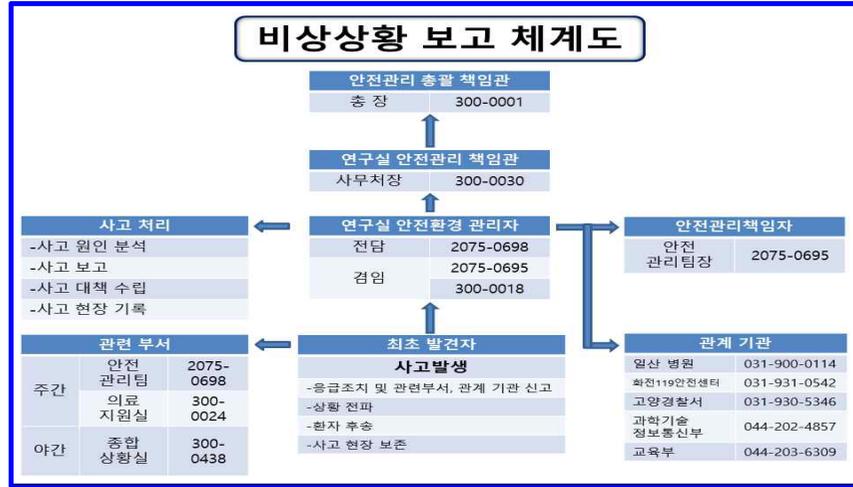


※ 비상 연락처 변경 시 수시 적용

부 칙

1 ~ 6 <생략>

제24조 (사고발생 시 긴급 대처 및 행동 요령 등)
 ① <현행과 동일>
 ② 사고발생 등에 따른 비상상황 보고 체계도는 다음과 같다.
 <개정 2016.3.1., 개정2018.6.15., 2021.12.13., 0000.00.00.>



※ 비상 연락처 변경 시 수시 적용

부 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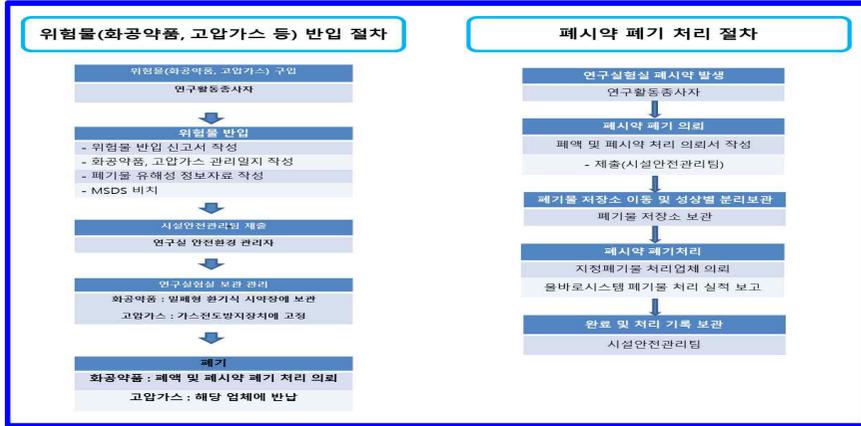
1 ~ 6 <현행과 동일>

7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하되,
 2022년 12월 13일부터 적용한다.

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

현 행

[별첨 3] 위험물 반입 및 폐시약 폐기 처리 절차 <신설 2021.12.13.>



개 정 (안)

[별첨 3] 위험물 반입 및 폐시약 폐기 처리 절차 <신설 2021.12.13., 개정 0000.00.00.>



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

[별첨 4] 연구실험실 일상점검표<신설 0000.00.00.>

연구실험실 일상점검표		20년 월										연구실 안전점검관리자	담당
연구실 명칭	연구실 책임자	점검 결과 (양호 : 1, 보통 : 2, 불량 : 3, 미점검 : 4)										일	일
구분	점검 내용	1	2	3	4	5	6	7	8	9	10	비고	
1	연구실(실험실)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												
2	연구실(실험실)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대응												
3	연구실(실험실)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대응												
4	연구실(실험실)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대응												
5	연구실(실험실)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대응												
6	연구실(실험실)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대응												
7	연구실(실험실)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대응												
8	연구실(실험실)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대응												
9	연구실(실험실)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대응												
10	연구실(실험실)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대응												
11	연구실(실험실)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대응												
12	연구실(실험실)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대응												
13	연구실(실험실)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대응												
14	연구실(실험실)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대응												
15	연구실(실험실)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대응												
16	연구실(실험실)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대응												
17	연구실(실험실)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대응												
18	연구실(실험실)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대응												
19	연구실(실험실)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대응												
20	연구실(실험실)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대응												
21	연구실(실험실)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대응												
22	연구실(실험실)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대응												
23	연구실(실험실)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대응												
24	연구실(실험실)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대응												
25	연구실(실험실)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대응												
26	연구실(실험실)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대응												
27	연구실(실험실)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대응												
28	연구실(실험실)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대응												
29	연구실(실험실)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대응												
30	연구실(실험실)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대응												

연구실험실 일상점검표 양식 등재

※ 점검내용 변경시 수시 적용